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일, 박주민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4.1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 11. 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4. 12. 3.)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 9. 22.)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5. 9. 24.)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주민 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둔 조항 정비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보건복지부 소관 11개, 식약처 소

관 9개, 보건복지부·식약처 공동 소관 1개)에서 ‘과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각 법률에 따른 대상 자격·업무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동 소관 1개 법률 >

법률명	대 상	내 용
약사법 제31조제3항제3호(식약처) 제42조제4항제3호(식약처)	의약품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품 제조업(신고) 의약품등 수입업(신고)	○의약품등 제조업: 의약품 또는 의약품외품을 제조하는 영업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의품을 위탁 제조 및 판매하는 영업 ○의약품등 수입업: 의약품 또는 의약품외품을 수입하는 영업
약사법 제46조제4호(복지부)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허가)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 의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약사법 제45조에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 창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함.

< 보건복지부 소관 11개 법률 >

법률명	대 상	내 용
국민연금법 제35조제2호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 이사장: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 상임이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 공단의 회계,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아 노인등에게 재

제32조의2제4호	요양기관 운영자	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제1항제3호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제2호	적십자사의 임원	○ 회장: 적십자사를 대표하고 적십자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재정감독: 적십자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독하며 그에 관한 의견을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 법률고문: 적십자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3호	시·도사회보장 위원회 위원	○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3	사회복지 법인의 임원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해당 법인의 예·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의결(사회복지시설의 장도 동일 조항을 적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장애인, 노인, 산모·신생아 등)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돌봄·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의료법 제48조의2제4항제3호	의료법인의 임원	○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의 임원은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호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에 대해 동의권한을 가짐
지방의료원법 제11조제1항제3호	지방의료원 임원	○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임원 중 원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법 제9조제2호	재단 임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임원 중 원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 식약처 소관 9개 법률 >

법률명	대상	업무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제3호,제2 항제3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및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 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 조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건강기능식 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2항제2호제 제29조제5항제3호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 영업(허가)	○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 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영 업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 영업(허가·인증·신고)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과 디 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 기기가 조합된 의약품을 제조하는 영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7항제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허가)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 대행업(허가)	○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자를 위하여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허가)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 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 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 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허가)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 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소분·판매업 1.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2..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보존업 1..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쬔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2.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허가)	○ 용기·포장류제조업 1..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2.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접객업(허가)	○ 식품접객업 1.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

		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공유주방 운영업(허가)	○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의료기기법 제18조제2호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 의료기기(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를 제조하는 업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제7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을 제조하는 업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	○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위탁제조판매하는 업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2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허가)	○ 체외진단의료기기(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 ○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4호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허가)	○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1.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2.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3.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검토의견

□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이나 자격,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의미하며,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를 통해 일반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결격사유에 포함되고 있음. 그러나 파산선고는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거래상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므로,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이 가능하도록 이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 등의 결격사유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¹⁾.

- 참고로, 「행정기본법」²⁾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으로 ①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②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③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④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을 제시하고 있음.

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2)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 후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³⁾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개별법상 자격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취업 등에서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결격사유를 축소함에 따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결격사유의 도입 취지가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의 성격이 공적인 영향력이 크거나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의 노후소득을 위한 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금이사인 경우 대규모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운용을 책임진다는 점, 감사의 경우에는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 등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 관계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지방의료원, 한국국제의료재단,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과 같은 공공기관·위원회 및 법인의 경우 그 업무는 공공성, 신뢰성이 높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제공자,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취약계층의 수급권 등의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점,
-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요건인 물적 자산에 압류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해당 결격사유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소관 영업은 제품 자체의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 있고, 경제적 사항은 인허가시 시설기준 확인이 가능하고 안전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수용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도매상에 한하여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9개 법률은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11개 법률에 대해서는 결격조항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도록 수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 삭제 및 제11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개정안에서 일괄개정하는 개별 법률의 결격조항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허가 취소, 지위 승계 등 관련 조문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가.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의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업무의 공익성이나 경제적 신용 요구 정도를 고려한 결과,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도매상에 한하여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9개 법률은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11개 법률에 대해서는 결격조항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 삭제 및 제11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21개”를 “12개”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2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
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5조(중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를 제8조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2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u>21개</u>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u>제2조(「국민연금법」의 개정) 국 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2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u> <u>제4조(「노후준비 지원법」의 개 정)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5조(「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의 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8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6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u>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u>12개</u>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u>

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u>제7조(「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9조제1항제1호의3을 삭제한다.</u> <u>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7조제2호를 삭제한다.</u> <u>제9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15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u>제10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3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	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u><삭 제></u> <u><삭 제></u> <u>제3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15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u>제4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3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
--	--

이 한다.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u>제11조(「약사법」의 개정) 약사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u> <u>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46조제4호를 삭제한다.</u> <u>제12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u>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u>제13조(「의료기기법」의 개정)</u>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u>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이 한다.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u>제5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u>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 만 해당한다.</u> <u>제6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u>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u>제7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 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u>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	---

견인 <u>제14조(「의료법」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48조의2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15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3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u>제16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u> <u>제17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23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견인 <u><삭 제></u> <u>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3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u><삭 제></u> <u>제9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제23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	---

제18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

제19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
년후견인인 경우

제20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법」의 개정)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화장품법」의 개정) 화

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10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

제11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
년후견인인 경우

<삭 제>

제12조(「화장품법」의 개정) 화

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32조제1항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4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5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8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42조제4항제2호·제3호”를 “제42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6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7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8조의2제3항 전단 중 “제6조제1항제2호(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를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47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1항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항제5호 본문 중 “제23조제6항제6호·제7호”를 “제23조제6항제6호”로 한다.

제10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1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제12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1. 2. (생략) 3. <u>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u> 4.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2. (생략) 3. <u>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u> 4. 5. (생략)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u> 4. 5.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u> 4. 5. (현행과 같음)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사회보 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u>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4. ~ 8. (생략) ⑤·⑥ (생략)	제40조(시·도사회보장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u>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 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u> ⑧ (생략)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 성년후견인인 경우</u> ⑧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u>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u> <u>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인 경우</u> ② (생략)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u> <u>피성년후견인인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약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 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2. (생략) 3.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⑨ ~ ⑩ (생략)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생략) 3.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⑤ ~ ⑨ (생략)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

---.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제42조제4항제2호-----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 2의8. (생략) 3. ~ 7. (생략) ②·③ (생략)	----- -----. 2의2. ~ 2의8. (현행과 같음)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5. (생략) ③ ~ ⑪ (생략)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u>	제29조(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u>

<u>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u> <u>니한 자</u> 3. ~ 6. (생 략) ⑥ ~ ⑧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의료기기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 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 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 을 수 없다.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①·② (생 략)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 하여는 <u>제6조제1항제2호(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제4호· 제4호의2·제5호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u>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제조	③ ----- --- <u>제6조제1항제2호</u> ----- ----- ----- ----- ----- ----- -----

업허가"는 "신고의 수리"로 각각 본다.

④·⑤ (생략)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인증·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판매업자, 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제4호·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 25. (생략)

② ~ ⑤ (생략)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등)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

1.-----

-----제6조제1

항제2호-----

-----.

1의2. ~ 2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등) ①-----

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u>제6조 제1항제2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u>·제4호·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③ (생략)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제6조 제1항 제2호</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 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제39조(보호의무자)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u> <u>아니한 사람</u>	<u><삭 제></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① ~ ⑤ (생략)	제23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⑥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제></u>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4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생략)	제4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세포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나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나 영업소 폐쇄(제27조	② ----- ----- ----- ----- ----- ----- -----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3조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23조제6항제6호·제7호 또는 제2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6. ~ 14. (생략)

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6항제6호 -----

-----.

6. ~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u> 3. ~ 5. (생략) ③ ~ ⑪ (생략)	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⑪ (현행과 같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u> 5. ~ 10. (생략) ④ ~ ⑧ (생략)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u> 5. ~ 10.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화장품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제3조의3(결격사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u>피성년후견인</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